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-1판 개정전후대비표

<환자지침관리팀>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I. 대응체계		
3	[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('23.8.23. 발표, 8.31. 시행)] 1.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-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,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지정(8.31.) 2.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 (마스크)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(감염취약시설 보호)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 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, 면회, 외출·외박, 외부 프로그램 허용 3. 일반의료체계 안착 노력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국민지원 일부 유지 (외래진료)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(호흡기환자 진료센터(원스톱진료기관 포함), 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 종료) (병상)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(진단검사)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(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·방역물자) 지원 종료 (치료비)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(치료제 및 예방접종)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	[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('23.12.15. 발표, '24.1.1. 시행)] 1.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-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,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지정(8.31.) 2.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 (마스크)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(감염취약시설 보호)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 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*는 유지하되, 면회, 외출·외박, 외부 프로그램 허용 *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 3. 일반의료체계 안착 노력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국민지원 일부 유지 (외래진료)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(호흡기환자 진료센터(원스톱진료기관 포함), 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 종료) (병상) 지정격리병상 해제(12.31.)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(진단검사)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(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·방역물자) 지원 종료 (치료비)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(치료제 및 예방접종)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	- 상시지정병상 지정 해제 (12.31.) - 감염취약시설에서 선제검사 방식 추가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4. 기타 -----	4. 기타 -----	
5	나. 기관별 임무 개요 ----- 의료기관 ◦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◦ 코로나19 신고·보고(발생, 퇴원) ◦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◦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	나. 기관별 임무 개요 ----- 의료기관 ◦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◦ 코로나19 신고·보고(발생, 퇴원) ◦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◦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II.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			
8	1. 사례 정의 ◆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○ 확인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○ 추정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 ◆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○ 환자 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	1. 사례 정의 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* * 환자, 추정 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 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 ►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「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」 개정(‘24.1.1) ◆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○ 확인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○ 추정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	- 「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」 개정(24.1.1.)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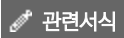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○ 의사환자 - 의심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없는 사람 - 추정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○ 병원체보유자 -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	◆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○ 환 자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○ 의사환자 - 의심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없는 사람 - 추정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○ 병원체보유자: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
8	◆ 무료 검사 대상(별도 공지시 까지) -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(부록 38 참고) -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<table><tr><th>보건소 선별진료소</th><th>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</th></tr><tr><td>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</td><td>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</td></tr></table> ◆ 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 검사 시,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	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◆ PCR 무료 검사 대상(별도 공지시 까지) <table><tr><th>의료기관</th></tr><tr><td>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</td></tr></table> ◆ 검사 시,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	의료기관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로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삭제 - 의료기관,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3439호, 2023.12.26.)에 따라 무료 대상자 범위 안내
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							
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							
의료기관									
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								
Ⅲ. 확진환자 관리									
9			- 확진자에서 사례 해당자로 용어 변경		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III 확진환자 관리 1. 확진환자 관리 가. 환자 관리 ○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▶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(24시)(6일 차 0시)까지 격리 권고 ▶ (예시) 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5. 24:00까지 격리 권고 ▶ 단,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○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○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▶ (참고문헌) Kim J-M, Kim D, Kim E-J.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-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. Public Health Wkly Rep 2022;15(14):871-2. ▶ 단,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제를 받은 자 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제를 받은 자 - 투석이 필요한 환자 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'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'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 ○ (건강관리)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,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-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-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,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◆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(예시) ○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○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(특히,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) ○ 마스크 상시 착용 ○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함성 등) 자제 ○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○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(화장실, 독방 등)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	III 사례 관리 1. 코로나19 사례 관리 가. 사례 관리 ○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(이하 사례 해당자)는 5일간 격리 권고 ▶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(24시)(6일 차 0시)까지 격리 권고 ▶ (예시) 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5. 24:00까지 격리 권고 ▶ 단,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사례 해당자는 7일간 격리 권고 ○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○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▶ (참고문헌) Kim J-M, Kim D, Kim E-J.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-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. Public Health Wkly Rep 2022;15(14):871-2. ▶ 단,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제를 받은 자 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제를 받은 자 - 투석이 필요한 환자 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'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'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 ○ (건강관리) 사례 해당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,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- 사례 해당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-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,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◆ 사례 해당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(예시) ○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○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(특히,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) ○ 마스크 상시 착용 ○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함성 등) 자제 ○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○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(화장실, 독방 등)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	- 확진자에서 사례 해당자로 용어 변경
10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(진료)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가능 -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,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 ▶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 한하여 치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 ▶ 지원 대상, 지원 기간 등 치료비 관련 세부사항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(제10판)」 참조 〈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〉 <table><tr><th>단계</th><th>정역</th><th>중증도 분류</th></tr><tr><td>1</td><td>말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</td><td rowspan="2">경증 이하</td></tr><tr><td>2</td><td>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</td></tr><tr><td>3</td><td>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</td><td rowspan="2">중등증</td></tr><tr><td>4</td><td>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</td></tr><tr><td>5</td><td>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</td><td rowspan="3">위중증</td></tr><tr><td>6</td><td>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</td></tr><tr><td>7</td><td>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</td></tr><tr><td>8</td><td>사망(death)</td><td>사망</td></tr></table> - 요양병원·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	단계	정역	중증도 분류	1	말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2	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8	사망(death)	사망	○ (진료)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가능 - 모든 사례 해당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,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 ▶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 한하여 치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 ▶ 지원 대상, 지원 기간 등 치료비 관련 세부사항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(제10판)」 참조 〈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〉 <table><tr><th>단계</th><th>정역</th><th>중증도 분류</th></tr><tr><td>1</td><td>말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</td><td rowspan="2">경증 이하</td></tr><tr><td>2</td><td>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</td></tr><tr><td>3</td><td>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</td><td rowspan="2">중등증</td></tr><tr><td>4</td><td>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</td></tr><tr><td>5</td><td>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</td><td rowspan="3">위중증</td></tr><tr><td>6</td><td>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</td></tr><tr><td>7</td><td>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</td></tr><tr><td>8</td><td>사망(death)</td><td>사망</td></tr></table> - 요양병원·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사례 해당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신속한 진료 및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	단계	정역	중증도 분류	1	말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2	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8	사망(death)	사망	
단계	정역	중증도 분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말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사망(death)	사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계	정역	중증도 분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말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사망(death)	사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○ (대응) 지자체 방역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신고·인지시 노출 및 전파위험도 평가 후 판단 (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)	○ (대응) 지자체 방역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시설 자율 신고·인지시 노출 및 전파위험도 평가 후 판단 (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) ○ (관리방법) 지자체^{시도/시군구}는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관할지역 감염취약시설 파악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대응·관리 유지	- 기 시행중인 업무 추가(9.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[역학조사분석담당관-1082(2023.8.30.): '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' ※ 기 시행중] ▶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 관리 및 보고 ① (보고기준)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기준(유전자검출) 및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내 10명 이상 집단 발생 사례 ② (보고주기)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취합하여 익주 월요일 보고 * 감염취약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환자관리, 감염관리 등 방역대응을 지속 하도록 안내 및 협조(8.30 공문발송) ③ (보고체계) 보건소(월) → 시·도(화) → 권역별 질병대응센터(수) → 본청 ④ (보고방법) 시설→보건소(유선 등), 보건소→시도(자체 메일시스템), 시도→질병청(온나라/공직자메일) 활용 ※ 메일 송 수신 시 파일 암호조치 등 보안관리 주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	 관련서식 [서식 5]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	 관련서식 [서식 5]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▶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경과보고 양식 (8.30 공문, 붙임자료 참고) <table><tr><th colspan="14">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경과보고 양식-5월</th></tr><tr><th colspan="14">집단발생 사례 통괄 현황</th></tr><tr><th colspan="4">진단결과</th><th colspan="2">조사결과(진단)</th><th colspan="2">조사결과(관리)</th><th colspan="2">조사결과(결과)</th><th colspan="2">조사결과(결과)</th><th colspan="2">조사결과(결과)</th></tr><tr><th>구분</th><th>시·도</th><th>시·군·구</th><th>시·군·구</th><th>구분</th><th>조사결과</th><th>조사결과</th><th>구분</th><th>조사결과</th><th>조사결과</th><th>구분</th><th>조사결과</th><th>조사결과</th><th>조사결과</th></tr><tr><td>1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tr><td>2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tr><td>3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tr><td>4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tr><td>5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tr><td>6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tr><td>7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001-100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구분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td>조사결과</td></tr></table>	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경과보고 양식-5월														집단발생 사례 통괄 현황														진단결과				조사결과(진단)		조사결과(관리)		조사결과(결과)		조사결과(결과)		조사결과(결과)		구분	시·도	시·군·구	시·군·구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1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2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3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4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5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6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7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- 기 시행중인 업무 추가(9.4)
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경과보고 양식-5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집단발생 사례 통괄 현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진단결과				조사결과(진단)		조사결과(관리)		조사결과(결과)		조사결과(결과)		조사결과(결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시·도	시·군·구	시·군·구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001-100	001-100	001-100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구분	조사결과	조사결과	조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13	3. 확진자 격리 권고 및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	〈삭제〉	- 생활지원비 지원종료(8.31)
Ⅵ. 실험실 검사 관리			
15	가. 채취장소 ○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	가. 채취장소 ○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7	가. 의뢰방법 ○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[서식 18]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○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입원환자 및 보호자는 취합검사로 의뢰(개별검사 불가) -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건강보험 청구건은 별도로 정한 관련 급여기준을 따름 나. 기관별 검사 의뢰 ○ (의료기관 선별진료소)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,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○ (보건소 선별진료소)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▶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가능 ▶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의뢰	가. 의뢰방법 ○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[서식 18] 검체시험의뢰서 서식(역학조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시) ○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입원환자 및 보호자는 취합검사로 의뢰(개별검사 불가) ○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건강보험 청구건은 별도로 정한 관련 급여기준을 따름 나. 검사 의뢰 ○ (의료기관)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,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○ (보건소)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(역학조사 목적 검사 시) ▶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의뢰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8	가. 검체운송 담당 ○ (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)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,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○ (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)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	가. 검체운송 담당 ○ (의료기관)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,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○ (보건환경연구원)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4.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 가. 개요 ○ (검사 오류) 검체 채취·취급·검사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▶ 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요청하는 재검사는 해당하지 않음 ▶ (검사 오류 의심 사례의 예시) - 동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채취한 서로 다른 다수의 검체가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 - 동일한 검체에 대한 반복 검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 - 의료진 소견에 따라, 임상증상이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사례 나. 기관별 역할 ○ (지자체) 검체 채취 단계를 포함한 검사 전 과정에 대한 1차 조사▶(오염 및 검체 뒤바뀜 가능성, 역학적 연관성 등),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▶ (1차 조사의 예시) - 검체 채취 상황 점검(장갑 교체, 청소, 소독, 검체 정보 기록, 검사 도구 취급 등 오염·뒤바뀜 발생 가능성 검토) - 의심 검체의 앞, 뒤 순서에 채취 또는 검사한 검체의 검사 결과 확인 - 검사기관의 반복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결과 확인(필요시, 잔여 검체 활용한 재검사 시행) ○ (질병관리청) 심층 조사, 검사기관 점검·관리 등 다. 절차 및 방법 ①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조사 종료 ▶ 피검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, 피검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② 검사 오류가 확인된 경우	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(역학조사 목적 검사 시) 〈삭제〉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-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, 보건소는 피검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 및 필요한 후속 조치 시행(환자 신고 정정 요청, 재발 방지 조치 시행 등) ③ 검사 오류가 의심되나,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- (지자체) 1차 조사 결과, 검토 의견 등 포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(진단총괄팀)에 검토 요청(공문 송부) - (질병관리청) 지자체의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, 필요시 추가 조사하여 검사 오류 가능성 검토 → 지자체에 검토 결과 통보		
부록			
76	부록 13<삭제> ▶ 환경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」 참조	부록 13<삭제> <삭제>	- 환경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」 폐지
88	부록 22	부록 22 <삭제>	- 전담치료병상 지정 해제 (12.31.)
104	부록 36 ▶ (폐기물 등 환경관리) 생활 및 의료폐기물 *은 관할 지자체(보건소)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* (환경부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」 참조	부록 36 ▶ (폐기물 등 환경관리) 생활 및 의료폐기물 *은 관할 지자체(보건소)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<삭제>	- 환경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」 폐지
108	부록 38	부록 38 <삭제>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09	부록 39 ○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,901,002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공유(8.25. 기준, GISAID) ▶ 1개(19.12.24.)→1,567개(20.4.30.)→1,467,158개(21.6.15.)→14,212,802개(22.12.15)→15,901,002(23.8.25)	부록 39 ○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,301,489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공유(12.7. 기준, GISAID) ▶ 1개(19.12.24.)→1,567개(20.4.30.)→1,467,158개(21.6.15.)→14,212,802개(22.12.15)→15,901,002(23.8.25)→16,301,489(23.12.7)	- 자료 현행화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[SARS-CoV-2 바이러스 계통 분석('23.8.25. 기준)] * 자료출처 : https://Nextstrain.org ▶ ----- ▶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및 모니터링 - 질병관리청도 VOC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중으로, '21년 알파(B.1.1.7), 베타(B.1.351), 감마(P.1), 델타(B.1.617.2) 등을 지정하여 감시하였고, '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모든 오미크론을 VOC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음 - 또한,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다양한 하위 세부계통으로 분류되어, 그 중 주요한 세부계통 변이를 별도 분리하여 모니터링(XBB.1.16, XBB.1.9.1, EG.5, XBB.2.3 등)하고 있음(8.25) 나. 병원소 ○ ----- 다. 변이 ○ ----- ----- ○ 국내의 경우, '21년 7월 델타, 22년 1월 오미크론 BA.1, 22년 3월 BA.2, 22년 7월 BA.5, '23년 1월 BA.2.75의	[SARS-CoV-2 바이러스 계통 분석('23.12.7. 기준)] * 자료출처 : https://Nextstrain.org ▶ ----- ▶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및 모니터링 - 질병관리청도 VOC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중으로, '21년 알파(B.1.1.7), 베타(B.1.351), 감마(P.1), 델타(B.1.617.2) 등을 지정하여 감시하였고, '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모든 오미크론을 VOC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음 - 또한,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다양한 하위 세부계통으로 분류되어, 그 중 주요한 세부계통 변이를 별도 분리하여 모니터링(EG.5, HK.3, BA.2.86 등)하고 있음(12.7) 나. 병원소 ○ ----- 다. 변이 ○ ----- ----- - 오미크론 중 가장 변이 폭이 큰 BA.2.86이 확인(23년 7월)되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○ 국내의 경우, '21년 7월 델타, 22년 1월 오미크론 BA.1, 22년 3월 BA.2, 22년 7월 BA.5, '23년 1월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하위 세부계통인 BN.10이 우세화되며 유행을 주도하였고, 이후 다수 XBB 세부계통(XBB.1.5, XBB.1.16, EG.5 등)의 점유 증가가 확인됨	BA.2.75의 하위 세부계통인 BN.10이 우세화되며 유행을 주도하였음 . 이후 다수 XBB 세부계통(XBB.1.5, XBB.1.9.1, EG.5 등)의 점유 증가가 확인되며, '23년 11월에는 EG.5의 하위계통인 HK.3가 우세화되었음	
문고 답하기(Q&A)			
138	Q1. 코로나19 검사는 언제,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 ○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고,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(유료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·의원에 방문해서 검사,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다만,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(PCR 또는 신속항원검사), 검사 비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. ○ 또한,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	Q1. 코로나19 검사는 언제,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 ○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,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·의원에 방문해서 검사,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다만,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(PCR 또는 신속항원검사), 검사 비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. ○ 또한,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38	Q2. 더 이상 무료 검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? ○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더라도,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므로,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	Q2. 더 이상 무료 검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? ○ 아래의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- (환자) 유증상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,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* 예정 환자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로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삭제 - 의료기관,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3439호, 2023.12.26.)에 따라 무료대상자 범위 안내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
	○ 단, 우선순위 대상이 일부 조정되어,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한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, 사전에 우선순위(부록 38)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○ 또한, 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*은 건강보험과 국비(본인부담금) 지원을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(「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」) 〈코로나19 무료 PCR 검사 대상〉 <table><tr><th>보건소 선별진료소</th><th>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</th></tr><tr><td>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</td><td>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</td></tr></table> ○ 이러한 지원 대상 외에는,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	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	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- (보호자)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○ 이러한 지원 대상 외에는,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	
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					
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						
140	Q3.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? ○ 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)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	Q3. 국가에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? ○ 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)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	- 사례정의 변경 및 지정격리병상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안내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위중증 환자의 치료비(본인부담금)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 ▶ 세부내용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업무(제10판)」 참조	위중증 환자의 치료비(본인부담금)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 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* 중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실**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 *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 ** 지정격리병상 해제(23.12.31.)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 제외 ▶ 세부내용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업무(제10판)」 참조	
140	Q4.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? ○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,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Q4.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? ○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	- 다중이용시설 내용 현행화
142	5.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Q1, Q2	〈삭제〉	- 생활지원비 지원 종료(8.31)
143	6.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Q1. 해외입국자에 대한 최신화된 방역절차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? ○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Q2.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 방법은? ○ 질병청 누리집,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, 큐코드 사이트 (https://cov19ent.kdca.go.kr)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	〈삭제〉	- 큐코드 누리집 및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 주소 현행화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144	7. 기타 Q1.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, 여행 전 확인해야 할 입국 관련 정보가 있을까요? ○ 여행 전 질병관리청 ‘해외감염병 NOW’에서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정보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▶ (해외감염병 NOW) www.해외감염병now.kr/infect/occurrence_list.do ▶ (외교부해외안전여행) www.0404.go.kr/dev/main.mofa	7. 기타 Q1. 해외입국자에 대한 최신화된 방역절차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? ○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Q2.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 방법은? ○ 큐코드 누리집(http://qcode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 Q3.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, 여행 전 확인해야 할 입국 관련 정보가 있을까요? ○ 여행 전 질병관리청 ‘해외감염병 NOW’에서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정보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▶ (해외감염병 NOW) http://해외감염병now.kr/nqs/oidnow/infect/occurrence_list.do ▶ (외교부해외안전여행) www.0404.go.kr/dev/main.mofa	- 큐 코드 누리집 및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 주소 현행화